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시·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무를 도로 환수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4. 주요골자

【보건위생과】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식품으로 기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 해부” 조항이 삭제되어 위임조항에서도 삭제하고,

○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면허취소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원에유동과】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 위임하여 처리하던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사무가 농림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사무가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 신설함.

【축 산 과】

- 현재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 관련 영업장의 인·허가 등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지역개발과】

-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지형도면의 승인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체육시설 등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시·군에 추가로 위임함

【교 통 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 위임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가 되어 위임조항에 신설함

【도 로 과】

- 공공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었던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함.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건설종합분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보건위생과 소관의 조리사 면허증 관련사무,
교통과 소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화물자동차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등 관련사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보건위생과 소관 사체해부사무의 근거 조문 폐지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 원예유통과 소관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와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했던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 **축산과 소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규모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지역개발과 소관 국토이용관련사무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결정 관련사무는 관련 법조문과 세부 위임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도로과 소관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이 통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축산과 소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관리에 관한 사무는 축산물 등의 수거검사사무를 제외하고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은 지방분권 및 권한의 이양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별표1의 권한위임 사무 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개발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되므로,

- “도시기반시설”은 ⇒ “기반시설”로
- “도시계획의 결정”은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권한의 위임 필요성 여부,

제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를 위임하였으나,

근거법령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제25조 제3항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과
- 제25조 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제7호를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로 수정하고,

근거법령을

⇒ “동법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만 위임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3항의 실시계획의 변경 폐지와 동법 제89조의 이행담보 권한을 포함시켜야할 것이므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를

⇒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붙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